영등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9. 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33호로 2013년 8월 2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요금 부과기준과 조정범위를 변경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규정 등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10분 단위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변경(안 별표 1)

나.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안 별표 1 비고 제3호제바호)

다.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 및 주차요금 할인규정 신설(안 별표 1 비고 제21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주차장법」제9조, 제14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조정범위 변경과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의 제공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였으며,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할인규정을 신설함.

❍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을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제를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2012. 1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4~5분을 이용하고도 10분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주차요금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연 1억 6천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구청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 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교통혼잡 완화, 주차난 해소, 환경오염 해소 등의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사업(Car-Sharing)에 대한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근거와 50/10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본 조례안이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과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주차요금 부담 완화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향후 조례개정에 따른 공용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주민홍보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